

996H

산2-118임

14-445

30-7도

29대

98-4도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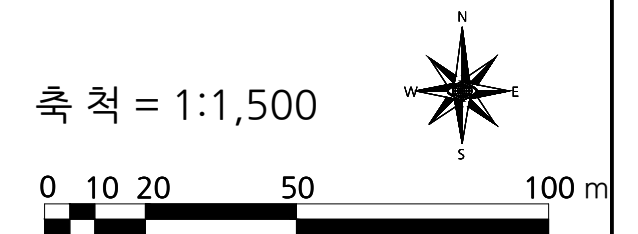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경계선
- 도시계획시설
- 건축한계선
- 보차혼용통로(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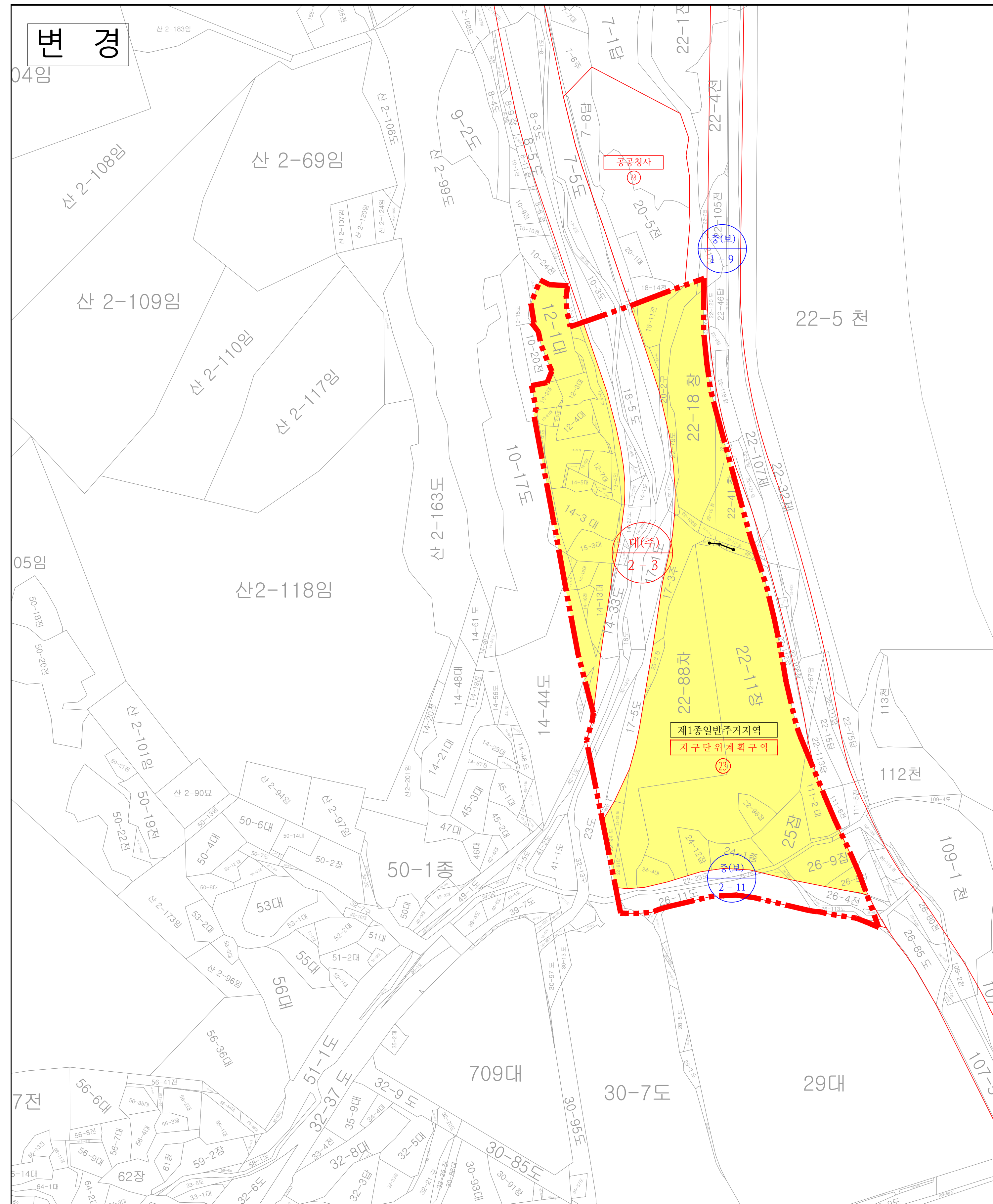
- 폭원 : 6m
- 연장 : 90m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지정 용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정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만 허용용도
		자연녹지지역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 · 공장 중 철단합중의 공장, 지식산업단지, 도장공장 및 식품공장 · 창고시설 중 창고, 김배출시설 · 동물 및 식물물관리시설 중 온실 · 야영장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종교시설 · 자동차관리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중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 태양광발전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	
	자연녹지지역	100%이하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여동명기술공단 중앙연구사사무소	구리시 도시계획과	구리시 도시계획과	구리시 도시계획과	구리시 도시계획과
직위	상무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직명	책임기술인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성명	최현호	오세원	김태희	오세원	김태희
확인인					

축척 = 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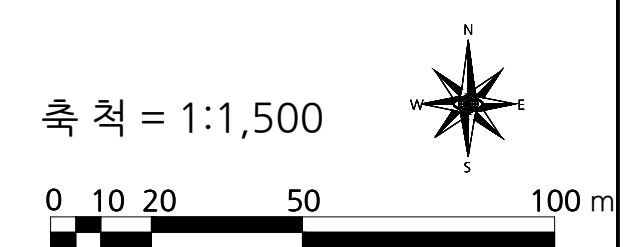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에서 정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하용용도
	불허 용도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

동구릉2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경계선
 -  도시계획시설
 -  건축한계선
 -  보차혼용도로(규제)
 -  공동개발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부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구리시 도시계획과	구리시 도시계획과	구리시 도시계획과	구리시 도시계획과
직위	상무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직명	책임기술인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성명	최현호	오세원	김태희	오세원	김태희
확인인					

A scale bar with markings at 0, 10, 20, 50, and 100 m. The bar is divided into segments: 0-10m (black), 10-20m (white), 20-50m (black), and 50-100m (white).

구분	지정용도	계획내용
녹지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정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허용용도
주거	주거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	

구분	작성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부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구리시 도시계획과	구리시 도시계획과	구리시 도시계획과	구리시 도시계획과
직위	상무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직명	책임기술인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성명	최현호	오세원	김태희	오세원	김태희
확인인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경계선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건축한계선
- 보차혼용도로(규제)
- 공동개발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 용도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정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허용용도
	불허 용도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동경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구리시 도시계획과	구리시 도시계획과	구리시 도시계획과	구리시 도시계획과
직위	상무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직명	책임기술인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성명	최현호	오세원	김태희	오세원	김태희
확인인					

축척 = 1:1,500

